

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집행부 검토 의견

경제정책실장 김의승입니다.

의안번호 제1649호,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

「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집행부
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동 개정 조례안은

○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
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
것으로

○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차별적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자 ‘소외계층’이라는
용어를 ‘취약계층’로 변경하였습니다.

○ 동 조례안 개정을 통해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
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, 집행부는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
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.

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